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6. 10.(수) 15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0년 5월 29일
- 회부일자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난·재해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, 재난발생 역시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재난·재해 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을 명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유도하고,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제9호)
 - 교육안전의 범위에 교육활동 중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련된 재난안전 사항 반영
- 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(안 제12조제3항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교육안전의 범위에 홍수·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을 포함하고,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에 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